

국토교통부 공 고 제2024-121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 8. 28.>](#)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 8. 28.>](#) 변경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

다. 시행일

-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

(‘24년 9월 1일 주유·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25, 4019, 4020(팩스 044-201-560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